

# 정부 및 유관기관 법령정보



기술표준원 공고 제2009-0258호

「전기용품안전 관리법·시행령·시행규칙」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9. 8. 25

기술표준원장

##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(안) 입안예고

### 1. 제·개정 취지

기업이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기본 모델수를 축소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하고, 인증기관이 안전인증·자율안전확인 현황을 관할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마련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### 2. 주요 내용

가.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세부안전 적용기준을 통합·조정하여 기업부담 경감(안 별표 7 및 별표 8)

1) 소비전력, 정격정류 등의 범위구분을 통합·조정하여 기업이 받아야 하는 기본모델 수를 축소

나.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·자율안전확인 현황을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개정(안 제14조의1, 제18조의1)

- 1)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·자율안전확인 현황을 매 분기마다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,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,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,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,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

다. 이미용기기의 세부 품목 중 「의료기기법」에 따라 이증규제 되는 품목 제외(안 별표2)

- 1) 「의료기기법」에 따른 허가대상과 중복되는 피부관리기 등 12개 품목을 자율안전확인대상 세부범위에서 제외

라. 기타 개정사항

- 1) 법제처의 행정규제 일몰제 시행에 따른 고시 정비
- 2) 조명기구 안전기준 개정에 따른 자체검사 시험항목 정비
- 3) 안전관리대상으로 신규 지정된 세부품목에 대한 세부적용 안전기준 마련 등

### 3. 문 의

개정(안)에 대하여 문의가 있는 개인, 업체 또는 단체는 협회 및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연락처

- 주 소 :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22-12, 마리오타워 310호
- 전화번호 : 02-809-8300(FAX : 02-890-8309)
- 홈페이지 : <http://www.ekesa.or.kr>

※ 기술표준원 연락처

- 주 소 :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
- 전화번호 : 02-509-7245(FAX : 02-507-6657)
- 홈페이지 : <http://www.kats.go.kr>